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
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금융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 등 금융거래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본인확인조치 대상 금융회사 추가(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)

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「통신사기피해 환급법」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 의무 대상 금융회사로 추가

나. 기타 문안정비(제10조의2제3항 개정)

현재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. 4. 00. ~ 5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

대통령령 제 호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(다만, 동법 제2조 제14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한다.)
4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 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

제10조의2제3항 전단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이의신청인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금융회사의 범위)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파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단서 신설>	제2조(금융회사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<u>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</u>
1. · 2. (생략) <신설>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3. 「 <u>여신전문금융업법</u> 」에 따른 <u>여신전문금융회사(다만, 동법 제2조 제14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는 제외한다.)</u>
<신설>	4. 「 <u>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</u> 」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
제10조의2(이의신청의 절차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	제10조의2(이의신청의 절차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

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<u>경우</u>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 ④ (생략)	----- ---- <u>경우 이의신청인에게</u> --- ---.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974